

석면관리 표준품셈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1장 총칙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2
1-6 세부시행기준	2
제2장 석면 측정	4
2-1 비산정도측정	4
2-2 석면농도측정	10
제3장 석면해체 · 제거공사 감리	15



▶ 제1장 총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1-6 세부시행기준

제1장 총칙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 ① 석면 측정(비산정도측정, 석면농도측정)
- ②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

1-3 용어의 정의

-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3)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 4)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 5)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길이, 개소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 6)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절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 7) “보정계수”란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 1)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다.
 - 투입인원수(인·일) = Σ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2)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다.
- 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에 따른다.
- 4)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5)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 추가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 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6 세부시행기준

- 1)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발주청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부 칙

2024년에 공표된 석면관리 표준품셈은 202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2장 석면 측정

2-1 비산정도 측정

2-2 석면농도 측정

제2장 석면 측정

2-1 비산정도 측정

가. 정의 및 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에 따른 석면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및 분석업무를 말한다.

나. 추진절차

“비산정도 측정”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업무	업무정의
1. 과업 준비	
1.1 측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검토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검토 ○ 측정기간 설정 ○ 시료채취 지점 설정 ○ 착수계 제출
1.2 측정장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장비 준비 및 점검
2. 비산정도측정	
2.1 현장 바탕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지홀더를 이용하여 현장 작업장 시료 채취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2.2 부지경계선(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제거 작업 전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작업 중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기본업무	업무정의
<p>2.3 작업장 주변 실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p>2.4 위생설비 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p>2.5 폐기물 보관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반출 물량 및 일정 확인 ○ 작업 중 또는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기본업무	업무정의
2.6 음압기 배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2.7 폐기물 반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3. 성과품 작성	
3.1 작업일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일지 및 데이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정도측정 기록지 정리 - 지점별 측정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기록 - 비산정도측정 분석 결과 통보 시간
3.2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표 작성 ○ 준공계 제출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기본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계수
		초 급 기술자	
1. 과업 준비			
1.1 측정계획 수립	500㎡	0.20	①
1.2 측정장비 준비	500㎡	0.10	①
2. 비산정도측정			
2.1 현장 바탕시료	2지점	0.10	②
2.2 부지경계선(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4지점	0.36	③
2.3 작업장 주변 실내·외	1지점	0.09	④
2.4 위생설비 지점	1지점	0.10	⑤
2.5 폐기물 보관지점	2지점	0.20	⑥
2.6 음압기 배출구	1지점	0.10	⑦
2.7 폐기물 반출구	1지점	0.10	⑧
3. 성과품 작성			
3.1 작업일지 정리	1지점	0.01	⑨
3.2 보고서 작성	1지점	0.02	⑨

- 주 1) “2. 비산정도측정” 업무는 현장 측정 업무와 분석사가 수행하는 시료분석(전처리, 분석, 결과서 작성 등) 업무를 포함한 기준인원수를 말한다.
- 2) 시료채취 소모품(PCM필터 등) 및 분석 소모품(장갑, 특급필터, 슬라이드 글라스, 시약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
- 3) 시료채취 지점 및 세부 지점 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에 따른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 계수	①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A}{500})^{0.3}$ ※ A = 석면해체 · 제거면적(m²)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현장 바탕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N_1}{2}) \times D_1$ ※ N₁ = 비산농도측정 현장바탕시료 채취(지점) ※ D₁ = 폐기물 반출 일을 포함한 작업일수(일) 	
	③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N_2}{4}) \times D_2$ ※ N₂ = 부지경계선 시료 채취(지점) ※ D₂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④ 작업장 주변 실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₃ × D₂ ※ N₃ = 작업장 주변 시료 채취(지점) ※ D₂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⑤ 위생설비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₄ × D₂ ※ N₄ = 위생설비지점 시료 채취(지점) ※ D₂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⑥ 폐기물 보관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N_5}{2}) \times D_3$ ※ N₅ = 폐기물 보관지점 시료 채취(지점) ※ D₃ = 폐기물 반출기간(일) 	
	⑦ 음압기 배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₆ × D₂ ※ N₆ = 음압기 배출구 시료 채취(지점) ※ D₂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⑧ 폐기물 반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₇ × D₂ ※ N₇ = 폐기물 반출구 시료 채취(지점) ※ D₂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⑨ 성과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₈ = D₂ × (N₂ + N₃ + N₄ + N₆ + N₇) + (D₃ × N₅) ※ N₈ = 현장 바탕시료를 제외한 전체 시료 채취(지점) ※ D₂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 N₂ = 부지경계선 시료 채취(지점) ※ N₃ = 작업장 주변 시료 채취(지점) ※ N₄ = 위생설비지점 시료 채취(지점) ※ N₆ = 음압기 배출구 시료 채취(지점) ※ N₇ = 폐기물 반출구 시료 채취(지점) ※ D₃ = 폐기물 반출기간(일) ※ N₅ = 폐기물 보관지점 시료 채취(지점) 	

2-2 석면농도측정

가. 정의 및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및 분석 업무를 말한다.

나. 추진절차

“석면농도측정”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업무	업무정의
1. 과업 준비	
1.1 측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검토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검토 ○ 측정기간 설정 ○ 시료채취 지점 설정 ○ 현장 답사 ○ 착수계 제출
1.2 측정장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장비 준비 및 점검
2. 석면농도측정	
2.1 현장 바탕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지홀더를 이용하여 현장 작업장 시료 채취 ○ 시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2.2 실내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제거 완료 상태 확인 - 음압설비 및 밀폐시설 정상적 가동 유지 상태 확인 -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침전된 분진 비산되도록 작업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계 보정 - 측정장비 설치 - 시료 채취 - 사진 촬영(시작시간/종료시간) - 시료채취용 펌프의 유량 확인 - 측정장비 회수 및 세척 ○ 시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 - 분석 - 결과서 작성
3. 성과품 작성	
3.1 작업일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일지 및 데이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별 현황(공간명, 밀폐면적, 시료수) 및 시료채취 위치 - 공간별 측정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기록 - 석면농도측정 분석 결과 통보 시간
3.2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준공계 제출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기본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계수
		초 급 기술자	
1. 과업 준비			
1.1 측정계획 수립	50㎡	0.20	①
1.2 측정장비 준비	50㎡	0.10	①
2. 석면농도측정			
2.1 현장 바탕시료	2지점	0.10	②
2.2 실내측정	1지점	0.14	③
3. 성과품 작성			
3.1 작업일지 정리	1지점	0.01	③
3.2 보고서 작성	50㎡	0.15	①

- 주 1) “2. 석면농도측정” 업무는 현장 측정 업무와 분석사가 수행하는 시료분석(전처리, 분석, 결과서 작성 등) 업무를 포함한 기준인원수를 말한다.
- 2) 시료채취 소모품(PCM필터 등) 및 분석 소모품(장갑, 특급필터, 슬라이드 글라스, 시약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
- 3) 시료채취 지점 및 세부 지점 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에 따른다.
- 4) 석면농도측정 시 작업자에게 필요한 필수 소모품(특급 방진 마스크 필터, 방진복, 방진장갑, 방진덧신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 계수	①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A}{50})^{0.1}$ ※ A = 석면해체 · 제거면적(m²)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현장 바탕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N_1}{2}) \times D_1$ ※ N₁ = 석면농도측정 현장 바탕시료 채취(지점) ※ D₁ = 폐기물 반출 일을 제외한 작업일수(일) 	
	③ 실내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₂ ※ N₂ = 실내측정 시료 채취(지점) 	



제3장 석면해체 · 제거 공사 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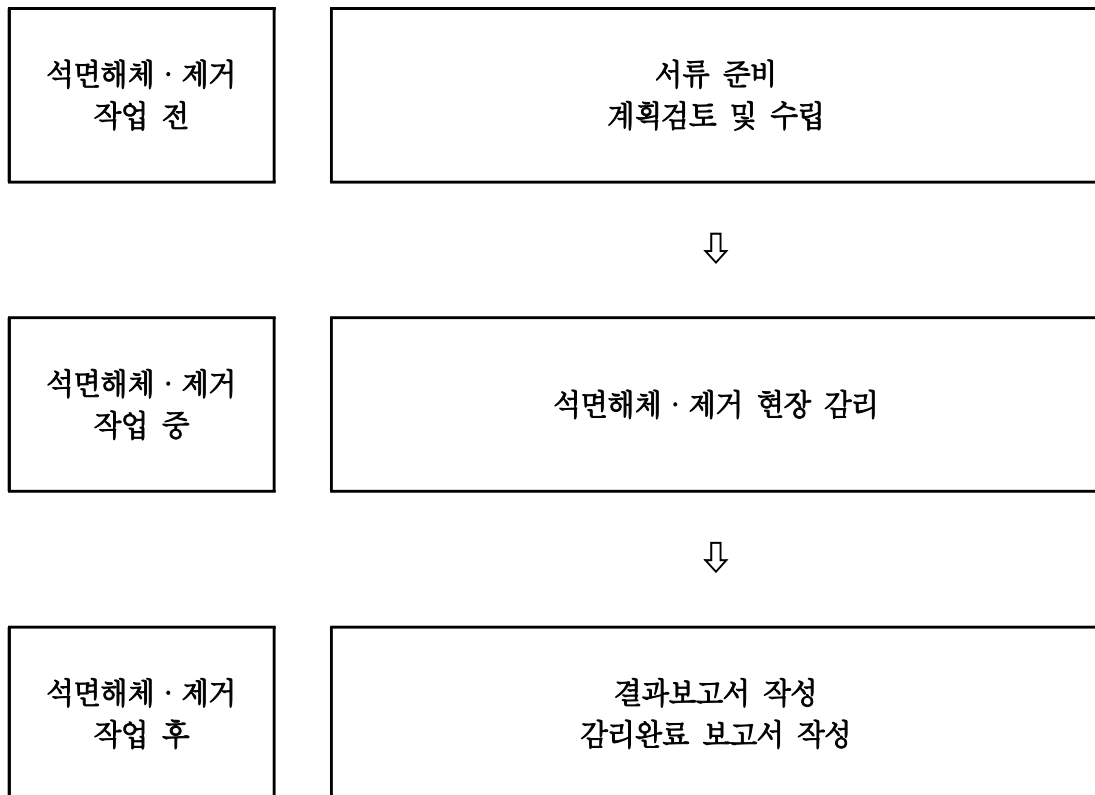
제3장 석면해체·제거 공사 감리

가. 정의 및 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에 따라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말한다. 기본업무 및 세부 수행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과 「석면해체·제거 표준감리매뉴얼」(환경부)에서 정하는 수행기준을 참고한다.

나. 추진절차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업무	업무정의
1. 과업 준비	
1.1 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서 작성 확인 ○ 착수계 제출
1.2 사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명회 참석 또는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일정 - 작업 및 관리 계획
1.3 민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모니터단 참여 ○ 주민감시단 참여
1.4 계획검토 및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조사결과서 검토 ○ 석면지도 적정성 검토 ○ 석면의 비산정도측정 계획 검토 ○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계획 검토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적절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개요 적절성 검토 -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계획 적절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보양 전 작업장 정리(물품의 이동, 청소상태 점검)와 비닐보양 계획 · 위생설비 설치 계획 · 습식작업 실시 계획 · 음압기 배치 및 음압의 확인 방법 계획 · 안전관리계획 및 근로자 보호조치 적절성 검토 · 지정폐기물(석면)의 반출·임시 보관·배출 계획 · 잔재물 조사·처리 계획 ○ 현장답사, 검토의견서 작성 ○ 계획 검토 시 부적절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사항 통보 ○ 석면해체작업 감리 수행계획 수립(감리원 배치 및 상주 장소, 배치 감리원 일별 업무계획, 일별 장비 지급계획 등)

기본업무	업무정의
<p>2.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주변 석면 허용기준 및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초과 시 작업의 시정 및 중지 요청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 검토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인근 주민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비산정도측정,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에 대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보양 작업 확인 - 위생설비 설치 확인 - 음압기(기록장치) 등 설치 위치 및 가동상태 적정성 확인 - 음압기 및 공기배출구 등 설치 위치 및 수량 확인 - 투입 인력 및 장비(해파청소기 등) 배치·사용 적절성 확인 - 석면해체작업 관리·감독(습윤제 살포, 비산방지 등) - 폐기물 보관 및 반출 적정 확인 - 석면 비산정도측정 감독 및 결과 확인 -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감독 및 결과 확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발생 시 보고 -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미 이행시 보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 감리일지 작성
<p>3. 감리완료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함 ○ 석면해체·제거 감리의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아래 첨부서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사진 등을 포함) -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 석면 비산정도측정 결과 사본 -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결과 사본 -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기본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계수	보정계수	
		초급 기술자			㉑	㉒
1. 과업준비						
1.1 서류 준비	800㎡	0.50	①	●		
1.2 사업설명회	800㎡	0.25	①	●		
1.3 민원 대응	1회	0.25	②	●		
1.4 계획검토 및 수립	800㎡	1.50	①	●		
2.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공사일 수	1.00	③	●		
3. 감리완료보고	800㎡	2.00	①	●	●	

주 1)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에 필요한 필수 소모품(마스크, 방진복, 방진장갑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 계수	① 면적	$\cdot \left(\frac{A+B}{800} \right)^{0.3}$ ※ A = 석면해체·제거 실내면적(m ²) B = 석면해체·제거 실외면적(m ²)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민원 대응	• N ※ N = 석면모니터단 또는 주민감시단 참여 횟수(회) 단,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상주기간 중 참여 횟수는 제외함	
	③ 공사일 수	• D ※ D = 비닐 보양 개시일부터 석면 안전성(잔재물 조사, 폐기물 반출 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일 수(일)	
보정 계수	㉓ 등급 보정계수	• 일반감리인 : 1.00 • 고급감리인 : $\left(\frac{\text{고급기술자노임단가}}{\text{초급기술자노임단가}} \right)$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적용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를 적용	
	㉔ 감리현장 특성	$\cdot \left(\frac{1.50A + 1.00B}{A + B} \right)$ ※ A = 석면해체·제거 실내면적(m ²) B = 석면해체·제거 실외면적(m ²)	